



손해보험의 이해 7: 해약환급금과 표준해약환급금 제도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해약환급금(cash surrender value)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그 계약의 해약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을 의미함.

-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충당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차액에 예정이자를 붙인 금액임.
 - 즉, 보험료적립금 전부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.

■ 해약환급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향후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게 되는 책임준비금과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.

-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적립하는 보험회사의 부채 개념인 반면,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시 자신이 유지했었던 보험계약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자 가격을 의미함.

■ 해약환급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것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¹⁾으로,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산출됨.²⁾

-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 시 공제하는 것을 “해약공제” 또는 “신계약비공제”라 하며,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“해약공제액”³⁾ 또는 “미상각신계약비”라고 일컬음.

1)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방식은 크게 순보험료식, Zilmer식, 해약환급금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,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출하게 될 보험금의 현재에서 향후 수입순보험료의 현재를 차감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만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임.

2) 보험업감독규정 제7-66조에 따르면,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${}_tV(N)$, 표준해약공제액을 a , 납입경과월수를 t , 해약공제기간을 m 이라할 때, 해약환급금(${}_tW$)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.

$${}_tW = {}_tV(N) - \{(12 \times m - t) / 12 \times m\} \times a$$

-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(-)의 값을 가질 경우 이를 영(0)으로 처리하며,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7년으로 설정함.

■ 해약공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계약비에 대한 미상각분 공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.

- 신계약비는 일반적으로 계약 초년도에 대부분 지출됨에 따라 그 규모가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을 계약기간을 통해 일정 금액씩 상각을 하게 되며, 해약이 발생할 때 미상각분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음.⁴⁾

■ 한편, 표준해약환급금제도란 해약환급금이 적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하는 예정신계약비에 일정 한도를 두어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임.

- 표준해약환급금제도는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가 신계약비 지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될 경우, 신계약비 부가 정도에 따른 해약환급금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임.
 - 예정사업비 자유화 조치이후 보험회사가 모집수당, 대리점수수료 등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해약공제액이 커져 해약환급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함.

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적정 수준의 표준기초율을 정함으로써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있음.

- 즉,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산출을 위해 표준책임준비금⁵⁾에서 적용하는 표준이율의 125%와 표준위험율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⁶⁾

3) 보험업감독규정 제7-69조, 제7-70조에 따르면, 장기손해보험과 제3보험에 대한 해약공제액 산출은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계산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4) 보험료 산출 시 보험기간 중 해약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상각하게 됨.

5) 표준책임준비금은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예정이율이 자율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 방지를 위해,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에 대해 감독당국이 최고한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함.

6) 한편,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을 “연납순보험료의 5% × 해약공제계수 +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/1000”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